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960
------	------

2021. 11.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일, 이경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11. 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경선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의3).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의 경우에도 신규 위탁과 동일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시의회 동의 규정의 입법 배경과 경위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서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이처럼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민간위탁은 매년 사무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방지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서울시의회는 2012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해 신규 민간위탁과 재위탁¹⁾·재계약²⁾은

1)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함(조례 제2조제4호),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함(조례 제2조제5호).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음(2012.3.29. 시행).

- 그러나, 모든 민간위탁 사무가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면서 동의 안의 급증으로 시의회의 심사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추진이 지연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신규위탁이 아닌 재위탁과 재계약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같음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음(2012.12.31. 시행).
- 2016년에는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고(2016.1.7. 시행), 2017년에는 재위탁·재계약 사무가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2017.7.13. 시행).³⁾
- 이 후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기간이 7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었고(2019.3.28. 시행), 동의 대상에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음(2021.3.25. 시행).

<민간위탁 시의회의 동의 관련 조례 개정 경위>

연번	시의회 동의 관련 개정 사항	조례 발의 및 시행시기
1	신규 민간위탁과 재위탁·재계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 절차 신설(제4조 제2항)	·발의 2011. 6. 15. (김연선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12. 3. 29.

3) 동시에 부칙의 특례규정으로 한 번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시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시의회 통제의 공백을 방지 하였음.

2	신규 민간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회의 동의로 갈음함(제4조 제2항)	·발의 2012. 11. 13. (김명수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12. 12. 31.
3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함.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음(제4조 제2항)	·발의 2015. 9. 1. (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16. 1. 7.
4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회의 동의로 갈음함.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재계약·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4조의3)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부칙 제2조)	·개정 2017. 6. 13. (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17. 7. 13.
5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회의 동의로 갈음함.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재위탁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음(제4조의3)	·개정 2019. 2. 25. (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19. 3. 28.
6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음(4조의3)	·개정 2021. 2. 5. (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3. 25.

다.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

-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411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7,028억원임(2021년 10월말 기준).
- 시의회는 그 동안 시의회의 동의 외에도 종합성과평가제도 도입, 회계감사 실시 등으로 민간위탁이 성과 위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왔음.

- 민간위탁 동의권은 민간위탁 사무 개시와 지속 여부를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처럼 재위탁을 신규 위탁과 동일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최근 개정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도 재계약을 제한하고 있어 재위탁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 10월 개정)에 따르면, 재계약의 장기화를 제한하고(시설형은 1회만 허용, 사무형은 연속 10년 도과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재계약 배제 사유를 강화하여(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75점 미만 등) 재위탁으로 유도하고 있음.

< 민간위탁 관리지침(61p) >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따라서, 재위탁시마다 동의를 받게 된다면 시의회의 통제력 강화로 무분별한 민간위탁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으나, 시의회의 심사부담 증가, 서울시의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경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6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1월 01일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김인제, 양민규,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은주,
이준형, 이태성, 임만균,
정재용, 최 선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의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의 본문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재계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② <u>재위탁 또는 재계약</u>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 ----- ----- ----- <u>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u> ----- ----- -----.</p> <p>② <u>재계약</u>----- ----- -----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